

#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7월 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7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7월10일) 상정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7월10일)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2003.1.1)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및 전임계약직공무원,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등의 사기양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특수업무수당을 현실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의한 인용법령과 조문을 일부 조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일반직의사, 전임계약직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인상함  
(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 특수근무지 장려수당을 180,000원에서 270,000원으로 조정함  
(안 제3조 별표 3)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개정하겠다는 뜻이죠?	<input type="radio"/> 행자부의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이 개정되어 하는 것입니다
<input type="radio"/> 공무원이 꺼려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인상하자는 것이죠?	<input type="radio"/>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 5. 심사결과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43호
의결 년월일	2003. 7. 15 (제105회)

제출년월일 : 2003. 7. 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등처리지침(2003. 1. 1) 개정  
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및 전임계약직공무원, 폐기물처리시설 근  
무자 등의 사기양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특수업무수당을 현  
실화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과 조문을 일부 조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일반직의사, 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사기양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특수업  
무수당을 인상함 (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근무자의 사기양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특수근무지  
장려수당을 180,000원에서 270,000원으로 조정함 (안 제3조 별표 3)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장려수당지급구분표중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란의 “180,000원”을 “270,000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 별표 1 ]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부 천 시 (갑 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 의사로 한다.

[ 별표 2 ]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 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생략)</p> <p>1. (생략)</p> <p>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p> <p>[별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5%;">전문의</th> <th style="width: 50%;">일반의</th> </tr> </thead> <tbody> <tr> <td>부천시(갑지)</td> <td>월 609,000원 이하</td> <td>월 518,000원 이하</td> </tr> </tbody> </table> <p>[별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등급별 근무연수별</th> <th style="width: 35%;">가급</th> <th style="width: 50%;">나급</th> </tr> </thead> <tbody> <tr> <td>5년 이상</td> <td>월 1,012,000원이하</td> <td>월 673,000원이하</td> </tr> <tr> <td>4년 이상</td> <td>월 1,006,000원이하</td> <td>월 667,000원이하</td> </tr> <tr> <td>3년 이상</td> <td>월 1,000,000원이하</td> <td>월 661,000원이하</td> </tr> <tr> <td>2년 이상</td> <td>월 995,000원이하</td> <td>월 656,000원이하</td> </tr> <tr> <td>2년 미만</td> <td>월 989,000원이하</td> <td>월 650,000원이하</td> </tr> </tbody> </table> <p>[별표 3]</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지급대상</th> <th style="width: 30%;">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③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전문의	일반의	부천시(갑지)	월 609,000원 이하	월 518,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급	나급	5년 이상	월 1,012,000원이하	월 673,000원이하	4년 이상	월 1,006,000원이하	월 667,000원이하	3년 이상	월 1,000,000원이하	월 661,000원이하	2년 이상	월 995,000원이하	월 656,000원이하	2년 미만	월 989,000원이하	월 650,000원이하	지급대상	지급액	③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180,000원	<p>제1조(목적)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p> <p>-----</p> <p>-----</p> <p>-----</p> <p>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전임계약직공무원-----</p> <p>-----</p> <p>[별표 1]</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5%;">전문의</th> <th style="width: 50%;">일반의</th> </tr> </thead> <tbody> <tr> <td>부천시(갑지)</td> <td>월 909,000원 이하</td> <td>월 818,000원 이하</td> </tr> </tbody> </table> <p>[별표 2]</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등급별 근무연수별</th> <th style="width: 35%;">가급</th> <th style="width: 50%;">나급</th> </tr> </thead> <tbody> <tr> <td>5년 이상</td> <td>월 1,312,000원이하</td> <td>월 973,000원이하</td> </tr> <tr> <td>4년 이상</td> <td>월 1,306,000원이하</td> <td>월 967,000원이하</td> </tr> <tr> <td>3년 이상</td> <td>월 1,300,000원이하</td> <td>월 961,000원이하</td> </tr> <tr> <td>2년 이상</td> <td>월 1,295,000원이하</td> <td>월 956,000원이하</td> </tr> <tr> <td>2년 미만</td> <td>월 1,289,000원이하</td> <td>월 950,000원이하</td> </tr> </tbody> </table> <p>[별표 3]</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70%;">지급대상</th> <th style="width: 30%;">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③-----</td> <td style="text-align: center;">27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전문의	일반의	부천시(갑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급	나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이하	월 973,000원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이하	월 967,000원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이하	월 961,000원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이하	월 956,000원이하	2년 미만	월 1,289,000원이하	월 950,000원이하	지급대상	지급액	③-----	270,000원
구분	전문의	일반의																																																							
부천시(갑지)	월 609,000원 이하	월 518,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급	나급																																																							
5년 이상	월 1,012,000원이하	월 673,000원이하																																																							
4년 이상	월 1,006,000원이하	월 667,000원이하																																																							
3년 이상	월 1,000,000원이하	월 661,000원이하																																																							
2년 이상	월 995,000원이하	월 656,000원이하																																																							
2년 미만	월 989,000원이하	월 650,000원이하																																																							
지급대상	지급액																																																								
③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180,000원																																																								
구분	전문의	일반의																																																							
부천시(갑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급	나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이하	월 973,000원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이하	월 967,000원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이하	월 961,000원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이하	월 956,000원이하																																																							
2년 미만	월 1,289,000원이하	월 950,000원이하																																																							
지급대상	지급액																																																								
③-----	270,000원																																																								